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1

발의연월일: 2020. 9. 11.

발 의 자 : 홍성국 • 이상민 • 한준호

민병덕 • 박재호 • 강선우

송재호 • 이원욱 • 임종성

김병욱 • 인재근 • 이용빈

양기대 · 김경협 · 위성곤

유관석 · 김성주 · 이용우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있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기존의 5·18민주유공자는 예우가 지속되는 반면에 이들로부터 청탁 등을 받고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군인 등은불명예제대 등으로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발생하고 있음.

이에 5·18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18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7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법률 제 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 조의2 및 제15조의 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 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5·18민주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 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
| 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 의 배제) ① |
|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 |
| 5·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 |
|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 |
|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 | |
|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 |
|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 | |
| 우를 하지 아니한다.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3 |
|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 | |
| 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 |
| 그 형이 확정된 자 | |
| 가. ~ 바. (생 략) | 가. ~ 바.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 |
| | 1조, 제11조의2, 제12조, |
| |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 |
| | <u>5조의 죄</u> |
| 4. • 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